

순천대학교 실험실습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85. 2. 17.
개정 1992. 4. 13.
개정 1995. 3. 29.
개정 2001. 11. 8.
개정 2007. 6. 26.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실험·실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험·실습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안
2. 실험·실습시설 및 기계 기구류의 확충 방안
3. 실험·실습시설 및 기계 기구류의 선정에 따른 적정성
4. 실험·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예산배정안
6. 실험·실습시설 및 기계 기구류의 공동활용 방안
7. 실험·실습 운영성과의 심사분석
8. 기타 실험·실습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6. 26, 2011. 5. 30)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처장, 정보전산원장, 공동실험실습관장, 학사지원과장, 경리과장, 시설과장, 및 각 단과대학 행정실장과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6. 26, 2011. 5. 30)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국 경리과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품목선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실험·실습기자재의 도입과 관련하여 품목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본부 및 각 단과대학에 품목선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자재 품목선정의 적정성 여부
2. 기자재 품목선정시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
3. 기자재 도입후 제반시설 및 운용예산 확보대책 수립 여부
4. 기자재 구매 규격작성시 경쟁성 부여 여부
5. 기타 기자재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본부 품목선정위원회는 공동실험실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 의한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과대학 품목선정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해당 단과대학장이 임명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에서 의결 및 건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4. 13)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